[별 점]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 작성요령



신규발급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 기본안내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http://lledu.nile.or.kr) 홈페이지 자료실 [서식모음] 탑재 서식 활용(원본)

(2) 유의사항

- 서식 관계법령 개정(2013.11.22)에 따른 최근 법령 서식 사용 필수
- 개정 이전 서식 작성 및 제출 시 신청접수 불가
- 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 (워드 및 수기 작성 가능)
-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또는 신청자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 신청은 무효 처리됨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요건에 충족되었으나 사회교육법 당시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 서식 사용

(3) 작성방법

- 각 항목별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음([작성예시 1] 참조)
 - ① 최종학위를 취득한 학교명
 - ② 최종학위 전공명(※ 구법 1급 1호 자격요건 대상자는 세부전공명 상세 기재)
 - ③ 최종학위를 취득한 학교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 년, 월, 일 상세기재)
 - ④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 기관명
 - ⑤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기관에서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이수한 시작시기(년, 월, 일) 와 종료시기(년, 월, 일)
 - ⑥ 신청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급수
 - ⑦ 신청 급수 및 자격요건을 호로 작성
 - ⑧ 자격증 신청 날짜를 년, 월, 일로 기재
 - ⑨ 신청자 본인 이름과 서명(또는 날인) 기재
 - ① 이수한 평생교육사 관련과목명
 - ① 해당 ①의 과목을 이수한 기관명(※ 구법 1급 1호 자격요건 대상자는 평생교육 관련 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이수과목명(법령교과목 포함)을 필수과목란에 기재)
 - ① 이수한 과목의 학점 ex) 2학점 또는 3학점
 - ③ 백분율 환산 점수 혹은 성적 산출시 부여받은 원점수
 - ④ 이수한 과목 학점의 총 합계
 - 15 이수한 과목 점수의 총 합계
 - (6)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경력사항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
 - 대상자 : 현장실습면제 대상자 또는 승급과정 이수자

[작성예시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3.11.2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앞쪽)			
	성명(한글)	홍 길 동		(한자) <i>洪 吉 童</i>					
	주민등록번:	호 <i>801122-1234567</i>		전화번호 <i>010-1111-2222</i>					
	주소 <i>서울 서초구 서초동 ○○○-○○</i>								
신청인	최종학력	① 학교명 <i>○○ 대학교</i>	② 전공 <i>경영학</i>						
		③ 기간 입학 <i>2009 . 3. 2.</i> ~ 결	들업 <i>2014. 2. 15</i> .	학위등	록번호 🔿	대학교-001			
	이수기관	④ 기관명 <i>○○ 대학교 또는 △△ 교</i> 육	⑤ 이수기간 2009. 9. 2. ~ 2014. 12. 15.						
	자격등급	⑥ 평생교육사 <i>2</i> 급							
신청 내용	자격요건	① 평생교육사 <i>2</i> 급 제	<i>3</i> 호						
41 0	이수과목 및 경력	뒤쪽과 같음							

「평생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2014* 년 *2* 월 *15* 일

신청인

9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ᅰᄎᄓᆯ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제출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	없음					
	외합니다) 1부						
	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6.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I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자격증 작성	→	발급대장 기재	→	교부(우편 교부 등)		
	신청인		신청인(이수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į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국기평생교육진흥원		

이수과목 및 경력

④ 이수기관명 ○○ 대학교 또는 △△ 교육원

이스교모

		이수과목		
구분	10 과목	⑪ 이수기관명	12 학점	13 성적
	평생교육론	<i>○○ 대학교</i>	3	85
	평생교육경영론	△△ 교육원	3	80
	평생교육방법론	△△ 교육원	3	78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i>○○ 대학교</i>	3	70
필수 과목	평생교육실습	०० पांच्य	3	90
		소 계	14 15	(b) 403
	<i>노인교육론</i>	 OO 대학교	3	75
	-			
	여성교육론	<i>00 대학교</i>	3	95
	교육사회학	△△ 교육원	3	87
	성인학습 및 상담	□□ 교육원	3	93
선택 과목	인적자원개발론	△△ 교육원	3	88
		소계		
		14 15	438	
		합계	14 30	841

16 경력

기관명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비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	2011.01.01 ~ 2013.12.31	36	
		~		
		~		
		~		
		~		

② 최종 학력 증명서

(1) 기본안내

O 최종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등(원본)

(2) 유의사항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는 제출 불가
- O 자격증 발급 신청서 상 기재한 최종 학력과 동일한 학위의 증명서 제출

③ 이수기관 성적 증명서

[1] 기본안내

○ 평생교육 관련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원본)

(2) 유의사항

- 성적증명서 상 신청서하고자 하는 평생교육 관련과목에 한하여 색펜(색연 필, 형광펜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함
- 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시간제등록 또는 평가 인정 학습과목을 병행하여 이수했을 경우에는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국 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4 기본증명서

[1] 기본안내

- 기본증명서란 개인의 변동된 인적 사항을 기록한 서식을 말함(원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혹은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 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 인하여 발급 요청 가능

(2) 유의사항

- 기본증명서는 당해 시기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 불가(관계법령 상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음)

5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기본안내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lledu.nile.or.kr) 홈페이지 자료실 [서식모음] 탑 재 서식 활용(원본)
- 작성방법은 [작성예시 2] 참조

[2] 유의사항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진행한 경우 「4. 실습내용」은 실습시간 160시간을 4주로 나누어 40시간에 해당하는 실습내용을 각 주차에 작성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는 현장실습 종료일 이후 작성 요망
- 작성내용 수정 시 반드시 해당 부분에 취소선(한줄)을 그리고, 실습지도자의 서명 또는 날인(실습생 개인 수정 불가)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실습기관명 : *○○ 평생학습센터*

2. 실습기간: 2012 년 7월 9일 ~ 2012 년 8월 3일(4주,총 160시간)

3. 실습지도자 :

직명	성명	담당	내용	비고
<i>주무관</i>	<u> </u>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업무 담당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교실 운영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 관련 4년 경력

4. 실습내용 :

제 1 주	제 2주	제 3 주	제 4주
 기관 및 실습내용 오리엔테이션 공문서 작성 실습 ○○프로그램 모의개발을 위한 계획수립(프로그램 조사및 분석) 			
:			

5. 실습상황

실습생 성명	학과명	근무태도 (10%)	자질 (15%)	학습지도 능력 (50%)	연구조사 활동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 리능력 (10%)	총평 (100%)	비고
홍길동	평생교육학과	10	13	45	14	9	91	

위 사실을 증명함

2012 년 *8* 월 *4* 일

○○ 평생학습센터장 △ △ △ 직인

[참고-1] 평생교육실습 기관 유형

구분		기관	유형	예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유형	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경북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14.1월 기준)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정받은 기관)				
평	②유형	문자해득교	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 · 지정 기관('11년 지정 시작)				
생 교		핃	l 생 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와 법	③유형	국가・지자	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평-	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④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⑤유형		1생교육시설 고·인가 기관	유초중등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⑥유형	평실	J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⑦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그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밖 의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른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법 령	⑧유형	훈련·연수형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9118	교육기관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⑨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교육기관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E	-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나. 대상자별 구비서류

① 백분위 점수 미기재 성적증명서 제출 대상자

[1] 제출서류

○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2) 기본안내

-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중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의 백분율 환산 점수 확인이 필요함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 신청대상자는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이하 등급별 점수 확인서)를 구비하여 제출함

(3) 작성방법

- 성적을 등급(A, B, C, D 등)으로 부여한 경우, 「백분율 환산 점수 사용」 란 체크(☑) 후 대학의 백분율 점수 환산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내용을 작성함([작성예시 4]의 [예시] 참조)
- 교과목 담당 교수 등이 성적 산출시 부여한 원점수를 사용한 경우, 「성 적 산출시 부여한 원점수 사용」란 체크(**▽**)

(4) 유의사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는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 등급별 점수 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대학에서 공통서류로 1 부만 구비하여 제출 가능함
- 신청대학이 아닌 타 대학(시간제등록 제외)에서 과목을 이수한 신청자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대학에서 등급별 점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비하여 제출함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각 대학(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 하시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성적증명서에 과목별 백분율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성(제출)하지 않습니다.

성 명:

학교명 :

□ 백분율 환산 점수 사용

성적	평점	환산점수									
	4.5			3.3			2.1			0.9	
	4.4			3.2			2.0			0.8	
	4.3			3.1			1.9			0.7	
	4.2			3.0			1.8			0.6	
	4.1			2.9			1.7			0.5	
	4.0			2.8			1.6			0.4	
	3.9			2.7			1.5			0.3	
	3.8			2.6			1.4			0.2	
	3.7			2.5			1.3			0.1	
	3.6			2.4			1.2			0.0	
	3.5			2.3			1.1				
	3.4			2.2			1.0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 산출시 부여한 원점수 사용

위 대상자가 본교(기관)에서 이수한 과목과 취득 성적(점수)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학과(부서)장 (인)

O [예시]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5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5	99	B+	3.3	87	C0	2.1	<i>75</i>	D0	0.9	63
A+	4.4	98	B+	3.2	<i>86</i>	C0	2.0	74	D-	0.8	<i>62</i>
A+	4.3	97	<i>B0</i>	3.1	<i>85</i>	C0	1.9	<i>73</i>	D-	0.7	61
A0	4.2	96	<i>B0</i>	3.0	84	C-	1.8	72	D-	0.6	60
A0	4.1	<i>95</i>	<i>B0</i>	2.9	<i>83</i>	C-	1.7	71	D-	0.5	<i>59</i>
A0	4.0	94	<i>B</i> -	2.8	82	C-	1.6	70	D-	0.4	<i>58</i>
A0	3.9	93	<i>B</i> -	2.7	81	C-	1.5	<i>69</i>	D-	0.3	<i>57</i>
<i>A</i> -	3.8	92	<i>B</i> -	2.6	80	D+	1.4	<i>68</i>	D-	0.2	<i>56</i>
A-	3.7	91	<i>B</i> -	2.5	<i>79</i>	D+	1.3	<i>67</i>	D-	0.1	<i>55</i>
A-	3.6	90	C+	2.4	<i>78</i>	D+	1.2	<i>66</i>	F	0.0	<i>54</i>
<i>A</i> -	3.5	<i>89</i>	C+	2.3	<i>77</i>	D0	1.1	<i>65</i>			
B+	3.4	<i>88</i>	C+	2.2	<i>76</i>	D0	1.0	64			

○ [예시]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3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3	99	B+	3.2	88	C+	2.1	77	D0	1.0	66
A+	4.2	98	B+	3.1	<i>87</i>	C0	2.0	<i>76</i>	D0	0.9	<i>65</i>
A+	4.1	97	<i>B0</i>	3.0	<i>86</i>	C0	1.9	<i>75</i>	D0	0.8	64
A0	4.0	<i>96</i>	<i>B0</i>	2.9	<i>85</i>	C0	1.8	74	D-	0.7	<i>63</i>
A0	3.9	<i>95</i>	<i>B0</i>	2.8	84	C-	1.7	<i>73</i>	D-	0.6	62
A0	3.8	94	<i>B</i> -	2.7	83	C-	1.6	72	D-	0.5	61
A-	3.7	93	<i>B</i> -	2.6	82	C-	1.5	71	D-	0.4	60
A-	3.6	92	<i>B</i> -	2.5	81	C-	1.4	70	D-	0.3	<i>59</i>
A-	3.5	91	<i>B</i> -	2.4	80	D+	1.3	69	D-	0.2	<i>58</i>
A-	3.4	90	C+	2.3	<i>79</i>	D+	1.2	<i>68</i>	D-	0.1	<i>57</i>
B+	3.3	<i>89</i>	C+	2.2	<i>78</i>	D+	1.1	<i>67</i>	F	0.0	<i>56</i>

② 구법 적용 대상자

[1] 유사과목 이수 대상자

- 구법 적용 대상자 중 법령상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 명칭 을 이수한 대상자는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함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1부(원본)
 - 강의계획서 1부(원본)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는 해당 유사과목을 개설·운영한 대학에서 교과내용 동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성함
- '강의계획서'는 과목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로 구비하여 제출
 - 강의계획서는 평생교육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유사과목 인정 심의 시 교과내용 동일여부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 [참고-2]에 따른 개정법 관련과목으로 이수한 대상자는 구법 관련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참고-2) 구법 관련과목으로 인정 가능한 개정법 관련과목 범위

구분	구법 관련과목	개정법 관련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경영론
필 수 과 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원격교육활용론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인간자원개발론	인적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	성인학습 및 상담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교육론
선 택 과 목	여성교육개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개론	노인교육론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 학교명 : *○○ 대학교*

○ 과목 운영 학과(학부)명 : *평생교육학과*

○ 유사교과목 확인내역

구분	법정 교과목명	인정 유사교과목명	과목 개설일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필수과목 선택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의 이해	2007년 2학기	교과과정 동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상기와 같이 법정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2014 년 2월 15일

0000대학교 총장

(또는 학과장)

※ [별첨] 과목별 강의계획서 각 1부.

(2) 현장실습 면제 대상자

- 구법 적용 대상자 중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3개월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는 현장실습 면제가 가능함
- 평생교육 현장실습 면제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함
 -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 평생교육시설신고(등록)증 1부(사본)
-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작성예시 6] 참조)
- ② 작성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자격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① [기관유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 [부록 11] 평생교육기관 유형」을 참고하여, 숫자로 기재함
- ⑤ [상세 담당업무]는 평생교육 경력사항을 인정하는 주요한 부분이므로 「평생교육 사의 책무별 업무」를 참고하여 실제 담당한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함
- @ [고용형태]는 아래의 보기에 따라 번호를 기재함

직군		고용형태					
70	1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공무 원	2	전임계약직공무원 등 상근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3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근	4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근 로 자	(5)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교	6	전임교강사(한 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강사)					
강 사	7	시간제강사(전임이 아닌 형태로, 매주 정하여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일정 액의 급료를 받는 교강사)					

- [1주일 근무시간 수]는 고용형태가 ①,②,④,⑥인 경우에는 40시간으로 기재하고,
 ③,⑤,⑦인 경우에는 1주일 간의 근무시간을 기재함
- ⑩ 동일기관에서 소속부서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Ⅲ. 경력사항]의 표를 늘려서 기재함
- ② 근무경력이 여러 기관에서 있을 경우, 각 기관별 1매씩 개별 작성하여 제출함
- ⊙ 경력산정 방식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 [부록 12] 평생교육 경력산 정표」를 참고함
- ③ [확인자]란에는 해당기관장 명을 기재하고 반드시 기관 직인 날인(기관장 개인 서명 불가)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ㅣ. 인	l. 인적사항					
성	명	홍 길 동	생년	월일	1980. 11. 22.	
구	분	공무원(✔), 근로지	.}(),	교강사()	
직	급	6급	직	위	주무관	

Ⅱ. 기관사항						
기관유형	1-3	기관명	<i>○○평생학습센터</i>	평생교육담당부서명	평생학습과	

Ⅲ. 경력사항							
소속부서명	근무기간	상세 담당업무	고용 형태	1주일 근무시간수			
평생학습과	'12.03.01.~ '12.12.31.	• 평생학습교실 운영 - 평생학습교실 사업운영계획 수립 - 학습자 및 교강사 관리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평생학습시스템 관리 :	4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2*월 *17*일

확인자 : *〇〇 평생학습센터장 Δ Δ Δ* 직인

(3) 구법 1급 1호 자격요건 해당자

- 구법 등급별 자격요건 1급 1호 적용 대상자([참고-3] 참조)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함
 - 박사학위논문 초록 1부(사본)
 - 논문명이 표기된 논문표지 1부(사본)(박사학위논문 초록 내 논문명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제출 필요)

[참고-3] 구법 적용 대상자의 등급별 자격요건(1급 1호)

○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 를 취득한 자

- * 평생교육 관련 전공
 -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공분야만 해당
 예)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인적자원개발 전공

③ 외국 대학 졸업자

[1] 대상

-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 또는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 번호*를 부여받은 자
 - * 국내거소 신고 번호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 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 내거소를 신고하고 부여받은 번호

(2) 제출서류

- O 외국 대학 졸업자는 최종학력 증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함
 -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원본)
 -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원본)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원본)

(3) 외국교육기관 허용 기준

- 교육기관 소재국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고, 국가 기관에 의해 학력인정 확인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O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순수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 인정함

(4) 학력인정 확인

- 학력인정 확인은 해당 국가기관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해당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시 '학력인정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이 외의 국가(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 등)는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해당국 교육법령에 의거한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 및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 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단,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제출할 필요 없음

④ 외국 국적 소지자

(1) 대상

○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체류 중 평생교육사 양 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원본)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원본)
- 국적증명서(여권 등) 1부(사본)

(3) 유의사항

○ 외국 국적 소지자는 결격사유조회가 불가하므로, 별도의 결격사유조회 절차 없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확인 절차를 수행함

재발급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 기본 안내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http://lledu.nile.or.kr) 홈페이지 자료실 [서식모음] 탑재 서식 활용

[2] 유의 사항

- 서식 관계법령 개정(2013.11.22)에 따른 최근 법령 서식 사용 필수
 - ※ 개정 이전 서식 작성 및 제출 시 신청접수 불가함
- 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 (워드 및 수기 작성 가능)
-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또는 신청자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 신청은 무효 처리됨

(3) 작성방법

- 각 항목별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음([작성예시 7] 참조)
 - ① 최초에 발급받은 자격 등급
 - ② 최초 발급 받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번호 (분실로 인해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발급대장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
 - ③ 최초 발급 받은 발급일
 - ④ 최초에 자격증 신청했었던 기관
 - ⑤ 재발급 신청 사유 (ex.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
 - ⑥ 자격증 재발급 신청 일자
 - ⑦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본인의 이름과 서명

[작성예시 7]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1.22>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글) 홍	흥길동	(한자) 洪 吉 童				
	주민등록번호	2 881122-1234567	전화번호 <i>010-1111-2222</i>				
	주소 <i>서울시</i>	서초구 서초동 856-999					
		0 -1111-1011					
	자격등급	① 평생교육사 <i>2</i> 급					
신청내용	최초 발급 받은 평생 교육사 자격 증 번호	② 111-11111	(③ 발	급연월일 <i>200</i>	09.02.15	
	이수기관	④ ○○ 대학교					
	재발급 신청사유	⑤ 분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⑥ 2014년

*02*월 19

신청인

⑦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1.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8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나. 대상자별 구비서류

[1] 기존 자격증 분실 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원본)(별도 제출자료 없음)

[2] 기존 자격증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원본)
- 평생교육사 자격증 1부(원본)
 - 기존 발급받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회수 필요

(3) 성명 정정 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원본)
- 기본증명서 1부(원본)
 - 당해 시기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제출

(4)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원본)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원본)
 - 당해 시기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제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5) 대학 보유 자료 미이관 대상자

- 재발급 신청 대상자 중 대학 보유 자료(2차-서류스캔본) 이관1) 시 관련서류 중 다음 의 서류가 미비한 대상자는 위의 서류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 제출함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1부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 단, 위 서류 중 이관된 서류를 제외한 해당 서류만 추가 제출함

[참고-4] 대학 보유 자료 미이관 대상자의 현장실습 평가서 재발급 불가 시

- ① 현장실습기관의 평가점수 보존 미비 등으로 재발급 불가 시 대체 보완서류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1부
- ② 현장실습기관이 폐쇄된 경우의 대체 보완서류
- 현장실습기관 폐쇄신고 증빙서류 1부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1부(단, 실습지도자 서명(또는 인)과 실습기관장 직인은 생략 가능)

¹⁾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 변경에 따른 대학 보유 자료 이관 협조 요청(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891(2013.11.18))

전환발급 신청서류

가. 제출서류

[1]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전환발급 신청서 1부(원본)

- 「평생교육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사회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 가능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lledu.nile.or.kr) 홈페이지 자료실 [서식모음] 탑 재 서식 활용

(2)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1부(원본)

O 기 발급받은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반환

나. 유의사항

- O 기 발급받은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분실한 자는 전환발급 신청서만 제출함
- O 각 항목별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음([작성예시 8] 참조)
 - ① 평생교육사 전환발급 신청등급
 - :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 급으로 전환발급 가능
 - ② 최초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급수
 - ③ 최초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발급번호
 - ④ 최초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취득기관
 - ⑤ 최초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연월일
 -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분실하여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자격증 발급 기관에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서

	성명(한글)		(한자)				
	OO(E2/	홍 길 동	<i>洪 吉 童</i>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881122-1234567			010-1111-2222			
181	주소						
	서울시 서.	초구 서초동 856-999					
	평생교육사 전환발급 신청등급	① 평생교육사 <i>2</i> 급					
신청				③ 자격증	번호		
내용	최초	② 사회교육전문요원 1 급	111-		11111		
	사회교육 전문요원	④ 이수기관		⑤ 발급연월일			
	발급내용	<i>○○대학교</i>		1995.02.15			
	「평생교육법」부칙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증의 전환발급을 신청합니다.						
			2014	년	<i>2</i> 월		<i>15</i> 일
		신청인	<u>기</u>	홍 길	' 동	(서명	또는 인)
국가평성	뱅교육진흥원·	장 귀하					